

새로운 관리요금 신설안

주환경부 관리하에있는지역안에 있는 주유소내 주유시설에 관한 대기오염정도를 조사하는 요금법규를 주환경부에서 제안 합니다. 대기 오염관리 요금법 (Chapter 173-455 WAC) 변경안을 의미합니다. 이법안은 2012년 9월 5일 상정 예정입니다. 대기 오염관리 요금법은 대기질을 저하시키는 산업활동에 관한 관리 요금제정에 관한 법입니다.

Q: 새로히 재정되는 요금은 우리 개스 스테이션에도 적용되나요?

A: 만일 다음과 같은 county 에 있으면 적용됩니다 (Adams, Asotin, Chelan, Columbia, Douglas, Ferry, Franklin, Garfield, Grant, Kittitas, Klickitat, Lincoln, Okanogan, Pend Oreille, San Juan, Stevens, Walla Walla, or Whitman). 또한 다음 7개 county 중 하나에 있으면 적용됩니다.

(확인 할것: <http://www.ecy.wa.gov/programs/air/local.html>).

Q: 자세히 설명해보세요?

A: 2000년 초에 이미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일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주유소는 주환경부에 등록 하여야하는 법규 (WAC 173-400-100) 가 이미 말소된 바 있습니다.

이등록 요금은 개스 증기 재포집검사하는 제도를 재정립하는데 사용될것입니다. 이제도는 주유 시설 주위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벤젠증기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치거나 지상에 형성되는 오존을 감소시키기위함입니다.

Q: 관리요금이 있나요?

A: 예. 주환경부에서 등록, 증기 포집 시설현장 검사, 행정, 증기노출 자료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요금을 신설할수있습니다. 이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요금징수를 위해 관련법규 (Chapter 173-455 WAC) 개정안 을 상정중에 있습니다.

상세 정보

공청회 시작전 구두설명:
3 곳에서 동시에 공청회를 개최하며 구두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 시간이 있습니다. 구두설명이 끝나고 공청회가 진행됩니다. Yakima, Spokane, Lacey 중 한곳에 직접 공청회에 참가하거나 전화로 문의 하여도 됩니다.

일자와 시간:

2012년 9월 25일 화요일: 1:30 오후

주 개최지:

Lacey 의 환경부 본부 사무실
300 Desmond Drive SE

비디오 영상 공청회 장소:

Yakima: Ecology Central Regional Office
15 West Yakima Avenue Suite 200

Spokane: Ecology Eastern Regional Office
North 4601 Monroe Street

연결 전화:

(360) 407-3780
PIN Code: 980708 #

전화 교환수가 연결 해줌. 선이 다 차면 연결 불가능함.

Web site:

http://www.ecy.wa.gov/programs/air/rules/fee_rule.html

연락처:

Elena Guilfoil
(360) 407-6855
elena.guilfoil@ecy.wa.gov

장애자를 위한 도움:

청각 장애자는 360-407-6800 으로 711 로 연결 하여 Washington Relay Service 의 도움을 받으시고, 언어 장애자는 877-833-6341 로 문의 바람.

Q: 요금이 얼마나 되나요?

A: 이법에 저촉되는 416 개주유소에서 각 탱크당 \$130 되는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이요금은 기존의 석유 지하 탱크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. 이제도를 운영하기위하여는 매년 약 \$109,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.

Q: \$109,000 은 무엇을 근거로 산정된 금액입니까?

A: 주법에 따르면 각 주유소 개스증기 포집 시설을 등록, 점검 하는데 총 20만불까지 소요 요금을 환경부에서 징수할수있으나, 비용절감을 위해 석유 지하탱크 관리업무와 대기오염 관리업무를 개개 현장검사시 검사직원 한명으로 총당 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현장 출장비용 및 행정비용을 극소화 시킨 결과입니다.

Q: 요금은 언제 징수 하나요?

A: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비지네스 라이선스 신청시 매년 이금액이 추가로 첨부되어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.

Q: 대기 관련 다른 관청도있는데 그곳에서 징수하는 요금과는 다른것입니까?

A: 대기 관리법에 의거, 각 카운티 별로 독립된 대기오염관리 지청을 설치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독립된 대기오염관리 지청이 없을시에는 주 환경부가 대기오염관리업무를 통상 관할 하고있습니다. 하지만 독립 지청에서 독자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나 업무는 주환경부에서 관여 할 수 없습니다.

Q: 주유장치를 관리하는 법규 (Chapter 173-491 WAC) 가 현재 말소 되었는데 재입법할 예정인가요?

A: 예. 대기관련 요금법안이 개정된후 이법안도 재상정 할 예정입니다. 관련 주유 장치 관리 연방법은 주법보다 더엄격합니다. 관련 법안 상정시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각주유 업소 와 관련 산업 과 상업체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.